

제 6장 금융자산·금융부채

1절 공통사항

목차 , 학습목표

목차

- 목적, 적용범위, 정의
- 금융상품의 최초인식
- 금융자산의 제거/ 금융부채의 제거
- 금융상품의 최초측정/ 후속측정/ 공정가치
- 공시
- 시행일과 경과규정

학습목표

1.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이해할 수 있다.
2. 금융상품에 대한 K-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.

목적, 적용범위, 정의

1. 목적

금융자산 · 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규정

2. 적용범위: 종속기업,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,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,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 다른 장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계약에 적용

3. 정의

- 금융자산: 현금,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→ 매출채권, 대여금, 투자채권, 파생상품
- 금융부채: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
→ 매입채무, 차입금, 사채, 파생상품, 금융보증계약

금융상품의 최초인식

-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
- 정형화된 거래(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)의 경우 매매일에 인식

금융자산(유가증권 제외)의 제거

- 금융자산의 양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 거래로, 이 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함.
 -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.
 -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.
 -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.

금융자산(유가증권 제외)의 제거

- 양도인의 효율적인 통제권의 행사: 자산양도 후 양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우
 -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 전에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 -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 -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가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-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보유하는지 여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

금융자산(유가증권 제외)의 제거, 계속

- 신용위험 등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‘하자담보책임’으로 채무의 변제에 대해 보증을 한 것과 같음. →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각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
- 매각거래
처분손익을 인식,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(부담)하는 자산(부채)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
- 담보거래
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

금융부채의 제거

- 금융부채는 채무자가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, 채무자가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소멸함.
-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,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함.
-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%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임.
- 소멸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.
-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,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함.

금융상품의 최초 측정

-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.
-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이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함.
-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(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)임.
-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,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·채무로서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.

금융상품의 후속 측정

- 유가증권, 파생상품, 채권·채무 조정: 이후 각 절의 규정 적용
 -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(*): 유가증권 절의 단기매매증권의 후속 측정방법을 준용(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)
 - 금융보증계약: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
 - 제 14장 ‘충당부채와 우발부채 · 우발자산’ 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
 - 최초인식금액에서 제 16장 ‘수익’ 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
 - 상각후원가: 위의 내용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
- (*) 당기손익인식지정: 1)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,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, 2) 벤처캐피탈, 뮤추얼펀드,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금융상품의 후속 측정, 계속

- **손상차손의 인식**
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.
- **대손충당금: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(유가증권 제외)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**
 -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
 -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

공정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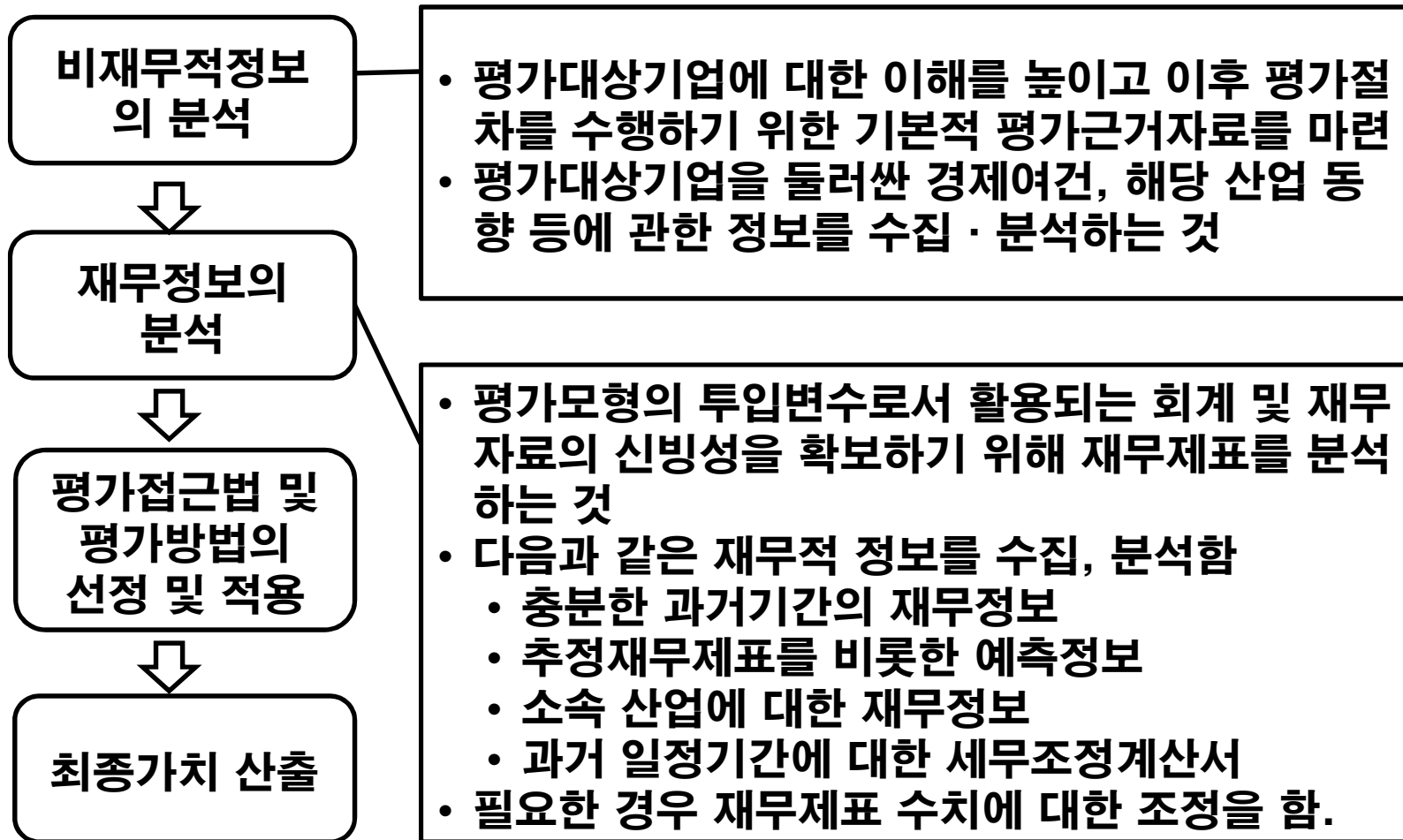
- **공정가치: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**
- **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**
- **활성시장이 없다면,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함. 평가기법은 다음을 포함.**
 - **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**
 - **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**
 - **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**
- **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 시장정보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기업특유정보의 이용을 최소화함.**

공정가치, 계속

-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의 적용사례
 - 1)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: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함.
 - 2)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,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채무증권 :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
 - 3) 1), 2)외의 채무증권: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. 이 때 투자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 등에 대한 제반가정을 반영하여야 함.
 - 4) 유가증권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과 채무자의 신용상태, 고정이자율 조건, 원금상환 조건, 통화종류 등의 특성이 유사한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시장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함.
 - 5)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가증권: 유가증권 전체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의 일부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에 근거하여 전체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음.
 - 6)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: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음.

공정가치, 계속

-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



공정가치, 계속

-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, 계속

비재무적정보
의 분석



재무정보의
분석



평가접근법 및
평가방법의
선정 및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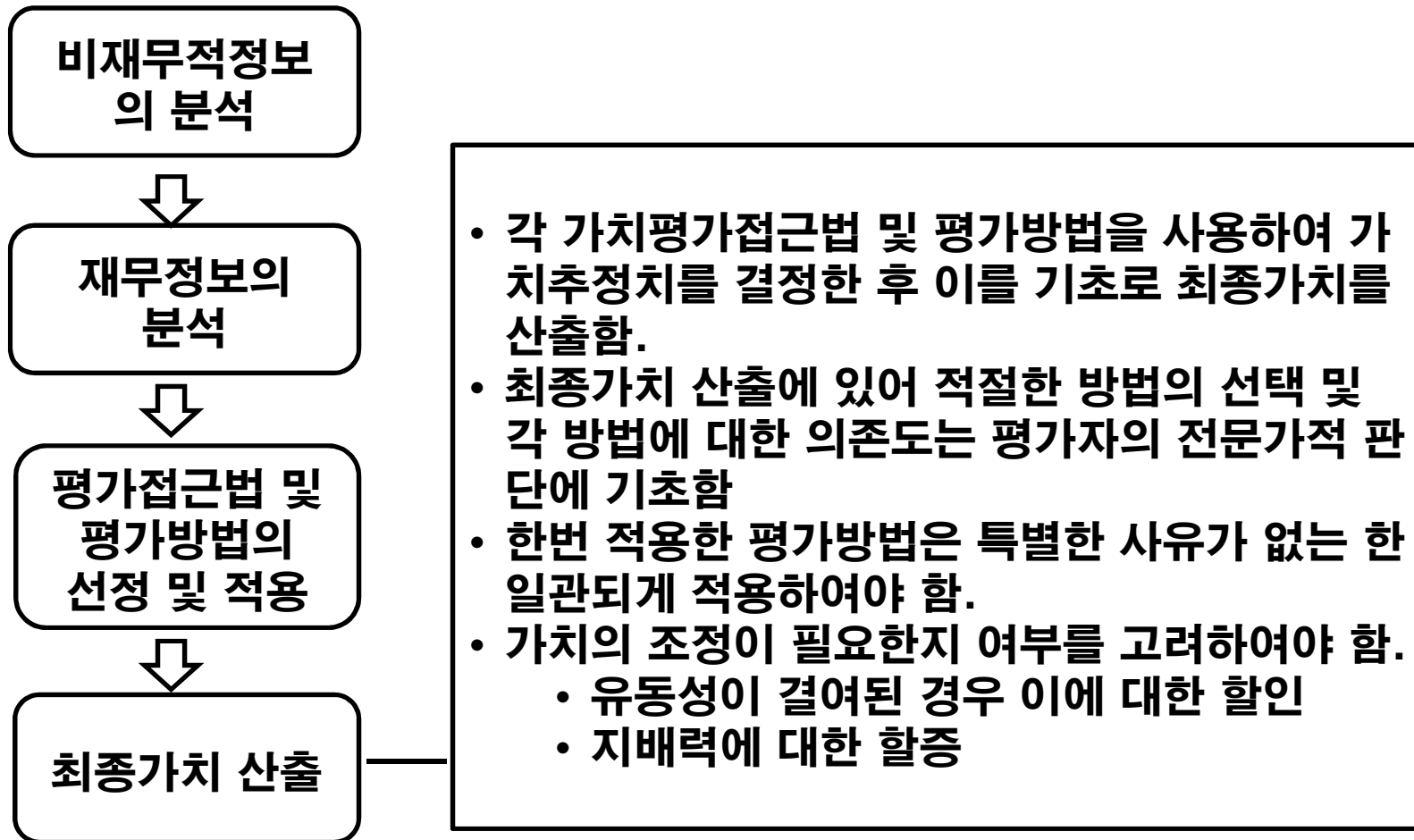


최종가치 산출

-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에 사용 되는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
 -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
 - 1) 이익접근법: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. 이익자본화법, 현금흐름할인법, 옵션평가모형 등의 평가방법
 - 2) 시장접근법: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. 유사기업이용법, 유사거래이용법, 과거거래 이용법
 - 3) 자산접근법: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.
-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. 그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계산

공정가치, 계속

-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, 계속



공시

-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및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
-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이자율, 이자율의 산정방법,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
-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
-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조건 등

시행일과 경과규정

- **시행일**

-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,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
- **경과규정**

- 종전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봄.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지 않음.

K-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

K-IFRS 제1039호	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	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등
• 금융상품의 최초측정		
공정가치로 측정		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부대비용 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
• 정형화된 거래의 인식		
• 정형화된 거래는 매 매일/결제일 회계 선 택	• 정형화된 거래는 매매일 회계 적용	
• 금융자산의 제거규정		
위험과 보상, 통제의 순차적 적용	위험과 보상 모형이 내재된 통제모형	

K-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

K-IFRS 제 1039호	일반기업회계기준 6장	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 등
•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		
① 회계불일치, ② 자산부채를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경우, ③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	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과 벤처캐피탈 등의 기업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	규정 없음
• 대손충당금 규정		
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	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	

평가하기

1. 다음 금융자산의 양도 중 매각거래인 것은?

- 1)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양도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- 2) 유통시장이 있는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- 3)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가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- 4) 양도자가 양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만기 전에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

답: 2번

2번 외에는 모두 양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므로 '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매각거래가 아니다.

평가하기

2. 금융상품의 제거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?

- 1)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,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.
- 2) 소멸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3) 받을어음을 금융기관 등에서 배서양도하는 거래는 어음양수인이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매각거래가 될 수 없다.
- 4)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.

답: 3번

- 신용위험 등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‘하자담보책임’으로 채무의 변제에 대해 보증을 한 것과 같으므로 매각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평가하기

3. 금융상품의 측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1)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.
- 2)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이후에 ‘충당부채와 우발부채 · 우발 자산’ 기준서를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측정한다.
- 3)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한다.
- 4)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,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당기손익 인식지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답: 2번

금융보증계약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.

- 1) ‘충당부채와 우발부채 · 우발자산’ 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
- 2) 최초인식금액에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

평가하기

4. 공정가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1)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.
- 2)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전체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의 일부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에 근거하여 전체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.
- 3)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경우 시장정보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기업특유정보의 이용을 최대화한다.
- 4)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.

답: 3번

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경우 관측가능한 변수인 시장정보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기업특유정보의 이용을 최소화한다.

<Summary> K-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

K-IFRS 제1039호	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	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등
• 금융상품의 최초측정		
공정가치로 측정	공정가치로 측정	거래가격
• 금융자산의 양도규정		
위험과 보상, 통제의 순차적 적용	위험과 보상 모형이 내재된 통제모형	
• 대손충당금 규정(유가증권 외)		
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	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	